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7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7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안전보안관의 위촉, 교육 및 임기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대표단 구성, 활동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
- 관리 및 해촉,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안전보안관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제3항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”에 의거 우리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.
-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·정착화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참고로 이미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제정 자치구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